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3가단5680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, 이정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혜인, 변호사 홍현진

피고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 담당변호사 용응규, 장병문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1)에 관하여 2021. 5. 24.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위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이 사건의 쟁점

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인데, 채무자인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고만 한다)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. 5. 24. 채권양도양수계약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한 사실,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무자력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다만, 원고의 소제기가 제척기간에 경과하였는지,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는지, 피고의 선의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본다.

2. 판단

가. 제척기간 도과 여부

1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, 피고는 C의 부도 직후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주식회사 D이 2023. 9. 25.

인천지방법원 2023타채5374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다(갑 제2호증)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기

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요청으로 부천시 G에 있는 'H공사'에 인부를 투입하였는데, 주식회사 F은 2020년 8월, 2020년 9월 및 2020년 10월의

인건비 28,050,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, C은 2020. 12. 19. 원고에게 위 인건비를 2020. 12. 31.까지 직불하겠다는 약속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
다. 선의 여부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,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부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또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.

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윤봉학

별지

1) 원고는 청구취지로 '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'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의미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(을 제3호증)에 표시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의 채권으로 선택한다.